

의안번호	2212228
의 퇴 인	배준영 의원
회 답 일	2025. 8. 20.
추계번호	25F425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166.6억원, 2028년 171.7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507.5억원(연평균 169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112.9억원(연평균 -37.6억원)
 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146.4억원(연평균 -48.8억원)
 -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24.3억원(연평균 -8.1억원)
 -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223.8억원(연평균 -74.6억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소 계 (안 제46조)	-166.6	-169.1	-171.7	-507.5	-169.2
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 (안 제46조제1항)	-37.0	-37.6	-38.3	-112.9	-37.6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(안 제46조제2항)	-47.6	-48.8	-50.1	-146.4	-48.8
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(안 제46조제3항)	-8.1	-8.1	-8.1	-24.3	-8.1
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 (안 제46조제4항)	-74.0	-74.6	-75.2	-223.8	-74.6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제1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-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28.12.31.	
2	안 제46조제2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28.12.31.	
3	안 제46조제3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-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28.12.31.	
4	안 제46조제4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-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6조제1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2	안 제46조제2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3	안 제46조제3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4	안 제46조제4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- (안 제46조제1항)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0년 16.6억원에서 2022년 23.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.7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5.5억원
 - (재산세) 2020년 17.9억원에서 2023년 19.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: 3.1%
- (안 제46조제2항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0년 3.3억원에서 2023년 31.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3.6억원
 - (재산세) 2020년 27.5억원에서 2023년 30.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: 3.6%
- (안 제46조제3항)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 및 재산세) 2023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3년 취득세 감면액: 7.9억원
 - 2023년 재산세 감면액: 0.2억원
- (안 제46조제4항)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0년 52.4억원에서 2023년 80.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59.1억원
 - (재산세) 2020년 11.4억원에서 2023년 12.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: 4.0%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46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 - 감면율: 취득세 및 재산세 35% 감면
 - 단,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및 재산세 50% 감면
(2020년 이후 추가 감면 시행, 2020~2022년은 취득세 및 재산세 45% 감면, 2023년 이후 50%로 감면율 확대)
- (추계방법)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0년 16.6억원에서 2022년 23.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

년 1.7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－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5.5억원

○ (재산세) 2020년 17.9억원에서 2023년 19.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－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: 3.1%

[표 2]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0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34.5	39.8	44.8	21.3
－ 취득세	16.6	20.3	23.5	1.7
－ 재산세	17.9	19.5	21.4	19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37.0억원에서 2028년 38.3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12.9억원(연평균 37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46조제1항)	-37.0	-37.6	-38.3	-112.9	-37.6
－ 취득세	-15.5	-15.5	-15.5	-46.6	-15.5
－ 재산세	-21.4	-22.1	-22.8	-66.3	-22.1

나.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과밀억제권역 외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46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- 감면율: 취득세 및 재산세 35% 감면
 - 단,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및 재산세 50% 감면 (2020년 이후 추가 감면 시행, 2020~2022년은 취득세 및 재산세 45% 감면, 2023년 이후 50%로 감면율 확대)

□ (추계방법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0년 3.3억원에서 2023년 31.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3.6억원
- (재산세) 2020년 27.5억원에서 2023년 30.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: 3.6%

[표 4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과밀억제권역 외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0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30.8	35.6	47.1	61.9
－ 취득세	3.3	5.5	14.1	31.3
－ 재산세	27.5	30.1	33.1	30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47.6억원에서 2028년 50.1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46.4억원(연평균 48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과밀억제권역 외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46조제2항)	-47.6	-48.8	-50.1	-146.4	-48.8
－ 취득세	-13.6	-13.6	-13.6	-40.7	-13.6
－ 재산세	-34.0	-35.2	-36.5	-105.7	-35.2

다.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46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 -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부터 시행(2021년 12월 28일 신설)
 - 감면율: 취득세 및 재산세 50% 감면
 - － 단,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및 재산세 65% 감면
- (추계방법)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- (취득세 및 재산세) 2023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3년 취득세 감면액: 7.9억원
 - 2023년 재산세 감면액: 0.2억원

[표 6]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3년
(단위: 억원)

	취득세	재산세	합계
감면실적	7.9	0.2	8.1

주: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부터 시행이나, 2022년 감면실적이 당초 제3항의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중복된 것으로 보아 2023년도 감면실적만 반영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8.1억원에서 2028년 8.1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24.3억원(연평균 8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취득세 및 재산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제46조제3항)	-8.1	-8.1	-8.1	-24.3	-8.1
- 취득세	-7.9	-7.9	-7.9	-23.7	-7.9
- 재산세	-0.2	-0.2	-0.2	-0.6	-0.2

라.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46조제4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○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○ 감면율: 취득세 60%, 재산세 50% 감면

－ 단,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75%, 재산세 65% 감면

□ (추계방법)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○ (취득세) 2020년 52.4억원에서 2023년 80.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－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59.1억원

○ (재산세) 2020년 11.4억원에서 2023년 12.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－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: 4.0%

[표 8]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0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52.4	73.7	78.8	80.9
－ 취득세	41.0	61.7	65.6	68.0
－ 재산세	11.4	12.0	13.3	12.9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74.0억원에서 2028년 75.2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376.2억원(연평균 75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제46조제4항)	-74.0	-74.6	-75.2	-376.2	-75.2
- 취득세	-59.1	-59.1	-59.1	-295.3	-59.1
- 재산세	-14.9	-15.5	-16.2	-81.0	-16.2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